##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67

발의연월일: 2025. 2. 11.

발 의 자:김태선·장철민·복기왕

이용우 · 한민수 · 허 영

김태년 · 박홍배 · 이학영

윤종군 · 김주영 · 김영배

박균택 · 김남근 의원

(14위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그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인공지능(AI)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이 공개된 개 인정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가 불명확하여 법령 해석 또는 판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하는 상황임.

이에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, 그 범위는 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 른 법 적용의 모호함을 해소하고, 정보주체의 권리보호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(안 제15조제4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한정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	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)		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		
<u> &lt;신 설&gt;</u>	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		
	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		
	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		
	를 통하여 공개한 개인정보는		
	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할		
	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		
	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주		
	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		
	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		
	한다.		